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85
------------	-------

발의연월일 : 2018. 12. 31.

발 의 자 : 이만희 · 김규환 · 이철규
조경태 · 성일종 · 추경호
최교일 · 엄용수 · 이양수
김태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검사의 목적이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권한 시행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감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싸움 경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 · 검사명령 등 행정 조사의 목적을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으로 구체화함(안 제21조 제2항).

법률 제 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명령·처분·검사 등) ① (생략)</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필요</u> <u>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 시행자의 사무소 또는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21조(명령·처분·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소싸움</u> 경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 시행자의 사무소 또는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